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22 발의연월일: 2022. 4. 12.

발 의 자: 안호영·김성주·김승원

김윤덕 · 김의겸 · 신영대

양경숙 • 유정주 • 윤준병

이수진 • 이용호 • 이원택

최강욱 • 한병도 • 허 영

황운하 · 김수흥 의원

(179]

제안이유

한국경제는 그동안의 압축적인 성장 과정에서 인구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간 소득 불균형을 유발했음.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로서 역대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음.

그러나 전라북도는 인구·산업의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차별과,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안에서의 차별 등 삼중 차별구조에 놓여 있음. 실제 2022년 현재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4개 시·군 중 11개가 소멸 위기 지역임.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임. 이는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

음을 의미함.

이에 전라북도새만금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이하 "전북새만금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 (안 제1조).
- 나. 전북새만금자치도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새만금 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다. 전북새만금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전북새만 금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 마. 국가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함(안 제1

6조).

- 바. 국가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8조).
- 사. 국가 또는 전북새만금자치도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 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
- 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1조).
- 자.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2 4조).
- 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자가 입주기업 등에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25조 및 제26조).
- 카.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음(안 제27조 및 제28조).
- 타.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9조).
- 파.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1조).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에 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새만금특별자 치도(이하 "전북새만금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 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전북새만금자치도의 관할구역 에만 적용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향유하

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새만금자치도가 계속 향유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전북새만금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새만금자치도는 전북새만금자 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전북새만금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조례(이하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전북새만금자치도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전북새만금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사업 추 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전북새만금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으로 한 경우 (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 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 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전북새만금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전북새만금자치도 를 설치한다.
 - ② 전북새만금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 전북새만금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7조(전북새만금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전북새만금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새만금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전북새만금자치도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편의 증 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전북새만금자치도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대책 에 관한 사항
 - 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5. 전북새만금자치도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은 각각 동수로 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
- 2.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부지사 1명
- 3.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 시장 또는 군수 2명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도시계획·개발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그 밖에 전북새만금자치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① 지원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와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북새만금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국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새만금자치도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북새만금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북새만금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 또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전북새만금자치도교육감"이 라 한다)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 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전북새만금자치도 조 레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 다.
- 제12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새만금 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 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국가와 전북새만금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전북새만금

자치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전북새만금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새만금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 또는 전북새만금자치도 교육감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 제15조(재정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설치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 동안 전북새만금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설치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동안 전북새만금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수 있다.
- 제16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새 만금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 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 제17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

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전북새만금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전북새만금 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 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또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출연금
 - 2.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수익금
 - 3. 제4항에 따른 납부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발전기금은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 ④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에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 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사업 지원
 - 2.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정 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의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5. 그 밖에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제20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전북새만금자치 도는 제18조에 따른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계약으로 정한다.
- 제21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북 새만금자치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 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

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북 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수 있다.
- ⑤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 ⑦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7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⑨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 ②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①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2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전북새만금특별도지사로 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

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신고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3.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 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제33조에 따른 면허고시, 같은 법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및 같은 법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 ·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 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제8조제1항제4호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인가 고시
-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 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 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운영

-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 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 2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 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 용수도설치의 인가

-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3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3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3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 3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3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

- 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 3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4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4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 4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4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 4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4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 행계획의 수립 및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 허가등의 협의

- 4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 48.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49.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 5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지정
- 51.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 제
- 5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에 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북새만금특별도지사는 관계 법률등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전북새만금특별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전북새만금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관계법률등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 등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제23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① 전북새만금 자치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전북새만금자 치도 조례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전북새만금자치도지 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승인 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북새만금 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처음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22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과 구비서 류 등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4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제21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 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전북새 만금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단체에 공무 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게 승진·전보·후 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일괄 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 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 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등의 양도 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 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 금,기반시설설치비용,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7조(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새만 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

- 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 내용
- 4. 그 밖에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진흥지구는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가 관리한다.
- ④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 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 제28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제27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 3.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 용수(用水)·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 6.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 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30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전북새만금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전북새만금자치도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전북새만금자치도는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연륙(連陸) 교통시설(공항과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전북새만금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북새만금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3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전북새만금자치도의회"이라 한다)에서, 2명은 전북새만금자치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전북새만금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새 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 제3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전북새만금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 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한다.
- 제3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전북새만금 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 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새만금자 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전북새만금자치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 또는 전북새만금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전북새만금자 치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전북새만금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3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 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전북새만금자

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사회협약) ①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북새만 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수 있다.
 - 1.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2.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 3. 그 밖에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사회협약을 체결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관련된 사안은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 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41조(해외협력) 전북새만금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 력·교류할 수 있다.
- 제42조(국가공기업의 협조) ① 전북새만금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자치도에 소재한 기관에 한정하며, 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전라북도의 폐지) 종전의 전라북도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전라북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전북새만금 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전북새만금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새만금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 원이 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의 사무와 전라북도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전북새 만금자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제4조(전라북도지사 및 전라북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 회의원은 이 법에 따른 전북새만금자치도지사, 전북새만금자치도의 회 의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전북새만금자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 북도가 제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전북새만금자치도 조

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